

# 기업농의 가능성과 조건

정책연구보고 P68 / 2004.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68 / 2004. 7

# 기업농의 가능성과 조건

선임연구위원 김 정 호  
부 연구 위 원 김 태 곤  
전 문 연 구 원 조 성 열

연구 담당

| 연구 자      |       | 담당분야       |
|-----------|-------|------------|
| 선임연구위원    | 김 정 호 | 총괄, 기업농 정책 |
| 부 연구 위 원  | 김 태 곤 | 일본의 기업농 사례 |
| 전 문 연 구 원 | 조 성 열 | 기업농 실태     |

## 머 리 말

DDA 협상의 진전, 칠레와의 FTA 발효 등 농업을 둘러싼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농업의 대안적 형태로서 기업농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농 논의는 1960년대에 농업기본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며, 1970년대의 농지법 논쟁을 통하여 기업농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1980년대 말까지 논의만 계속되다가, 결국은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농가의 발전적 형태로서 농업법인 제도를 발족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농업법인은 “기존 농가(농업인)가 각자의 생산수단을 자본으로 각출하여 기업을 구성하는 형태”로서 엄밀한 의미의 기업농은 아니며, “외래산업자본이 농지 구입 등으로 농업에 진입하고 생산수단과 농업노동자를 고용하여 기업적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형태”의 기업농은 일부 기업축산을 제외하고는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에 비추어 과연 기업농은 경제적으로 성립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기업농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기업농이 새로운 농업경영주체로서 기존 농가와 병렬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이 가족농(농가)을 근간으로 다양한 농업경영체가 공존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농업외부 자본에 의한 기업적 농업경영의 성립 및 발전 가능성과 조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짧은 기간에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이 보고서가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2004.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 목 차

|                           |    |
|---------------------------|----|
| I. 기업농의 개념과 추진 경과 .....   | 1  |
| 1. 기업농의 개념과 형태 .....      | 1  |
| 2. 기업농의 추진 경과와 동향 .....   | 7  |
| II. 기업농의 실태와 가능성 .....    | 11 |
| 1.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 .....      | 11 |
| 2. 기업적 농업경영의 사례 .....     | 17 |
| 3. 기업농의 가능성과 전망 .....     | 29 |
| III. 외국의 기업농 동향과 사례 ..... | 32 |
| 1. 일본의 농업법인과 기업농 사례 ..... | 32 |
| 2. 미국의 기업농 사례 .....       | 40 |
| 3. 프랑스의 농업법인 동향 .....     | 43 |
| IV. 기업농의 조건과 정책과제 .....   | 47 |
| 1. 농업 진입의 관련제도 .....      | 47 |
| 2. 농업경영체 지원을 위한 정책 .....  | 50 |
| 3. 농업경영체 관련세제 .....       | 52 |
| 참 고 문 헌 .....             | 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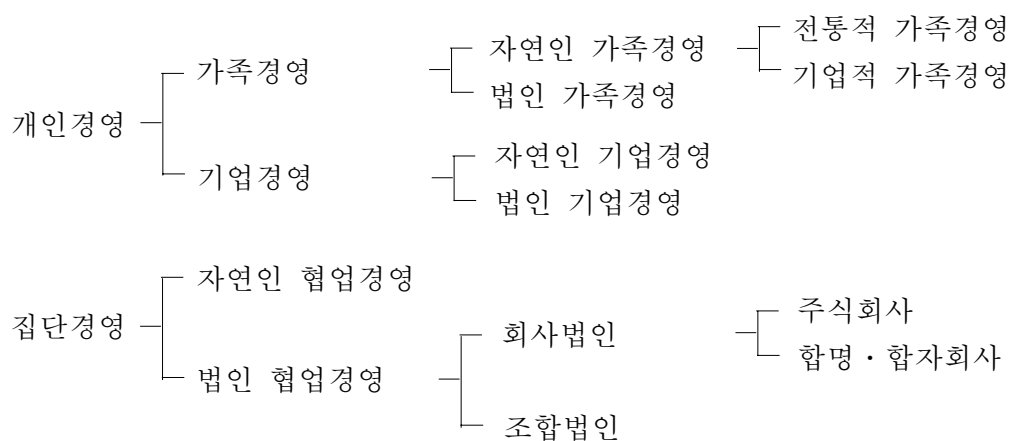
## I. 기업농의 개념과 추진 경과

### 1. 기업농의 개념과 형태

#### 1.1. 농업경영체의 유형 구분

- 일반적인 기업형태론적인 접근을 원용하여 농업경영체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먼저, 개인경영과 집단경영으로 구분하고 이어 개인경영에 대해서는 가족경영과 기업경영으로 구분하며, 집단경영에 대해서는 자연인 협업경영과 법인 협업경영으로 구분하는 것임. 따라서 기업농이라고 불리는 경영체 형태는 개인경영의 기업경영과 집단경영의 법인 협업경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1-1. 농업경영체의 형태 구분



- 개인경영과 집단경영의 구분은 농업경영의 소유자가 단일인가 또는 복수인가 하는 측면과, 경영자가 단일인가 혹은 복수인가 하는 측면의 두 가지 성격을 포함하며, 이러한 형태 구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첫째, 소유자가 단일인가 혹은 복수인가 하는 점에서의 구분은 전형적으로 말하자면 자본의 조달 조건과 관련되어 있음. 거액에 달하는 자본(자금이나 토지)의 조달은 단일한 소유자(출자자)로 이루어진 개인경영보다는 복수의 소유자로 이루어진 집단경영에 있어서 보다 용이하다는 것임.
  - 둘째, 개인경영으로서의 가족경영은 물론이고 임의 협업경영이나 법인경영의 대부분이 소유자가 경영자이고 동시에 노동자이기도 함. 이것은 우수한 경영자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개인경영보다는 집단경영에서 보다 용이하다는 것임.
  - 셋째, 농업경영의 계속성은 개인경영이나 집단경영 모두의 경우에도 후계 경영자의 확보를 불가결의 조건으로 하고 있음. 신규 참여의 조건은 신규 참여시의 후계 경영자의 신규 투자액, 경영교육의 경영 내 환경, 잠재적 후계자의 범위 등의 점에서 볼 때 개인경영보다는 집단경영이 더욱 유리한 경영내부 조건을 가지고 있음.
  - 넷째, 경영자가 단일인가 혹은 복수인가 하는 점에서의 구분은, 무엇보다도 농업경영의 경영 관리의 효율과 관련되어 있음. 단일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개인경영은 의사 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반면에, 복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집단경영에서는 신속성이 결여되고 비효율적이 되기 쉬움. 그러나 개인경영에 있어서는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경영관리에 관하여 분업의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집단경영에서는 그 가능성을 많기 때문에 경영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가족경영과 기업경영을 구분하는 요소는 노동력의 공급을 주로 가족노동력에 의존하는가 아니면 고용노동력에 의존하는가 하는 것임. 그러나 가족경영에서도 고용노동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노동력에 의한 구분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단계에 있으나, 고용노동을 많이 이용하는 가족경영이 성립·발전하여 기업경영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 착안한다면, 그들을 기업적 경영으로서 전통적 가족경영과 기업적 경영을 구분하는 것의 의미도 강조되지 않을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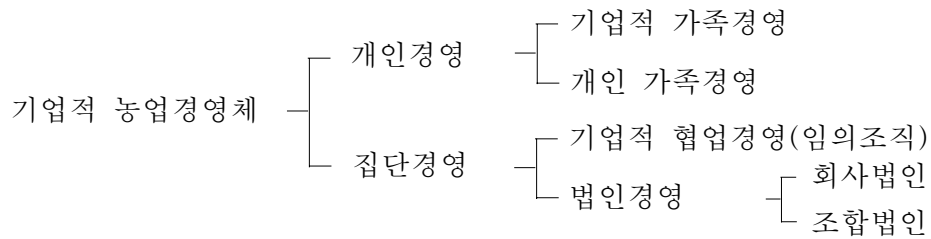
- 집단경영에서 임의집단경영(임의조직)과 법인집단경영(농업법인)을 구분하는 것은 집단경영이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의 구분이며, 임의협업경영과 법인협업경영과의 사이에는 농업경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제도와 관계, 즉 제도의 적용 가능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음. 특히 법인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인협업경영은 그 자체가 채권이나 채무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정책금융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1.2. 기업농의 개념과 유형

- 기업(企業)이란 사전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일 또는 그 사업’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농이란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기업농은 자기자본과 자가 노동력에 의존하여 혼합소득(混合所得)을 추구하는 가족농과 대립되는 개념이며, 어느 정도의 자기자본을 토대로 차입 자본과 고용 노동력 및 구입한 생산 자재를 결합하여 농업 생산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임.
  - 기업경영의 성과는 기업 이윤으로 나타나며, 가족경영의 소득을 구성하는 자작지 지대, 경영주를 포함한 가족노동 보수, 자기자본이자 등이 모두 비용으로 처리됨.
- 기업적 농업경영체는 소유자가 단일이나 복수이냐에 따라 개인경영과 집단경영으로 구분할 수 있음. 또, 개인경영은 경영주가 주도하는 기업적 가족경영과 개인 기업경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집단경영은 법인화 형태에 따라 임의조직인 협업경영체와 법인경영체로서의 회사법인 또는 조합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1-2. 기업적 농업경영체의 형태 구분



- 기업농과 가족농의 경영 측면의 차이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와 유사하며, 중소기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은 개인 또는 소수의 인적 집단이 기업의 중심이 되어 있으므로 자본과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경영체제도 1인 경영 체제를 취하여 경영자의 개인적 자질에 의해 크게 좌우됨. 따라서 권력성·독재성·온정성 등의 측면이 있는 반면, 기동성·원가의식·창의성·위험 부담감 및 책임감 등의 강점을 지님.
  - 중소기업은 자기자본 규모가 작고 타인자본의 조달능력 역시 경영자의 인적 신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의 한계를 가짐.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활동 분야는 중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교적 노동집약도가 높은 업종에 한정됨. 따라서 저렴한 노동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의 공급이 중소기업을 뒷받침하는 것인데, 노동임금이 상승되고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그에 의존할 수 없게 됨.
- 기업이 어떠한 조직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형태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구분되며, 농업법인의 특수한 형태로 영농조합법인이 존재함.
  - 개인기업은 자본 출자자가 1인으로서 출자 규모 또한 적은 경영이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고 인적 신용을 바탕으로 하여 자본을 확대하게 됨.
  - 합명회사는 인적인 신뢰 관계를 가지는 소수의 자본 출자자가 설립하는 회사임. 소수가 출자하므로 자본 규모는 제한되고, 기업의 신용 또한 인

적 관계에 의존하게 되므로 자본 출자자의 책임은 무한 책임임. 출자자의 전원이 합의하면서 경영자로서 역할하며, 만일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무한 책임자가 연대하여 책임지게 됨.

- 합자회사는 인적 신뢰 관계에 바탕을 둔 소수의 자본 출자자로 구성되는 회사로서 제한적으로나마 자본 출자액의 증가를 꾀할 수 있음. 자본 출자자 전원이 인적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유한 책임이라고는 하지만 자유롭게 이탈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 규모가 제한되며, 유한 책임 사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한 책임이 됨으로써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경영이 지배됨.
- 주식회사는 전혀 인적 신뢰 관계가 없는 유한 책임의 출자자가 증권시장을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자본 규모를 비약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업 형태임. 자본 규모가 기업의 신용이며, 자본 출자자 전원이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출자자 스스로가 경영에 참여할 필연성은 없기 때문에 경영을 담당하는 전문 경영자가 출현하게 됨.

### 1.3. 가족농과의 차별성

- 가족농은 다음과 같은 농업경영상의 강점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은 기업적 농업경영의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함.
  - 가족노동력의 자기고용: 외부의 노동력을 찾기 위한 비용을 비롯하여 노동 계약 등과 같은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불황에 대한 강인성: 최소한의 노동보수만으로도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음.
  - 신속한 의사결정: 가족의 유대를 기초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함.
  - 경영교육과 경영승계 기능: 후계자가 경영주와 함께 현장 체험을 통하여 인적 자본을 형성하게 되고, 경영 승계가 유연하게 이루어짐.
- 기업경영은 대부분 법인경영이라는 점에서, 농업경영의 법인화에 대한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제도·정책적인 측면으로, 법인격을 획득함으로써 채권·채무 및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과 경영내부의 업무에 이점을 향유하게 됨.
- 둘째, 경영상의 유리성으로, 법인화를 통하여 자본이 결합되어 자본 조달 능력이 증대되며, 또한 경영관리 능력이 결합되어 경영자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음. 특히 법인화에 의하여 구성원 후계자의 참여 조건이 정비됨으로써 다양한 인재의 확보가 가능함.
- 셋째, 농업경영에 대한 이미지 개선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직장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농가와는 달리 농업에 대한 직업의식을 고취할 수 있으며, 금융 면이나 시장 교섭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 넷째, 회사법인의 유리성으로, 회사법인은 인적집단과 자본집단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의 효율성을 용이하게 추구할 수 있음. 또한 경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경영자 능력이나 노동력 및 기타 생산 요소의 추가적인 조달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경영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외부에서 조달 가능한 이점이 있음.

표 1-1. 개인경영과 법인경영의 특성 비교

| 구 분    | 개 인 경 영  | 협 업 경 영      |                 |
|--------|----------|--------------|-----------------|
|        |          | 임 의 조 직 체    | 법 인 경 영 체       |
| 경영체 성격 | 단독 자연인   | 복수 자연인       | 복수출자자의 법인       |
| 사업 계속성 | 사망으로 종결  | 구성원의 해체로 소멸  | 영구적 또는 일정 기간    |
| 책임 형태  | 무한책임     | 무한책임         | 무한 또는 유한책임      |
| 자금 조달  | 개인의 투자   | 구성원의 투자      | 구성원 출자, 차입금 등   |
| 토지 조달  | 상속,구입,차입 | 구성원의 제공      | 출자, 구입, 차입      |
| 의사 결정  | 경영주 단독   | 구성원의 합의      | 구성원, 사원의 합의     |
| 소유자 사망 | 상속 또는 파산 | 생존하는 구성원에 매각 | 지분은 유산, 상속으로 보전 |

## 2. 기업농의 추진 경과와 동향

### 2.1. 기업농의 추진 경과

- 우리나라에서 기업농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2년에 농림부가 설치한 농업구조개선심의회에서 농업기업화 방식이 제시되고 구체적으로 협업농장 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임.
  - 당시 농림부는 전국 5개 지구에 협업농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구상하여 1963년 3월에 광주협업개척농장(경기 광주), 운장산협업개척농장(전북 진안), 백운산협업개척농장(전남 광양), 박달군협업개척농장(경북 월성), 대리협업개척농장(경남 양산) 등 5개 지역에서 협업농장 경영에 착수하였으나, 이상적인 협업농을 추구함으로써 1965년경에는 모두 해체되기에 이름.
  - 1969년에 설립된 증평협업농장만이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1990년 영농조합법인으로 등기하여 현재까지 활동 중임.
    - \* 1990년 농업법인 제도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협업경영이 법인격을 부여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증평농장은 소유농지를 관할기관인 괴산군청 명의로 등기하였음.
-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기업농업’ 육성이 제시되면서 정부의 농지법안에 농업 생산법인과 농사조합법인의 농지소유 허용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나, 1994년까지 농지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논의 수준에 그침.
  - 1967년 제정된 농업기본법 제17조와 제18조에서 농산물의 증산을 위하여 기업농을 조장하며,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경영의 협업화를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969년부터 정부가 제시한 농지법안에는 농업 생산법인(합자, 합명회사에 국한)에 해당하는 기업농이 3ha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축산 분야는 1960년대 후반부터 기업형 목장이 장려되면서 기업축산이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계열화를 통하여 기업축산의 활로가 모색되고 있음.
  - 1968년 수립된 축산진흥4개년계획에서 기업목장 육성을 표방하면서 기업적 축산경영이 활발하게 설립되는 계기가 됨. 예를 들어 삼양목장(삼양식품), 제동목장(한진그룹) 등이 초지를 개발하고 대규모 한우경영 사업을 시작하게 됨.
  - 1980년대 들어 기업축산이 축산농가 이익과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됨으로써 1984년에 축산법을 개정하여 사육두수 제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기업축산을 규제하기에 이룸.
- 1990년대 들어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가 대두되면서 농업에도 기업과 같은 조직 및 경영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정부는 1989년 수립된 농어촌발전대책에서 가족농 이외의 기업적 농업 경영체를 허용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위탁영농회사와 영농조합법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1990년대 초에 기업농의 사례로서 (주)현대건설의 서산간척지 농장, (주)포항제철의 유리 온실, 그 밖에 삼양사농장, 유당농원 등의 대규모 간척지 농장 등이 운영 중이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삼성그룹에서도 벼농사 영농대행회사에 대한 의향을 나타내기도 함.
-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가 새로운 농업경영 주체로 법제화됨.
  - 1994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위탁영농회사의 명칭이 농업회사법인으로 개칭됨.
  - 1996년 시행된 농지법에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법인으로 규정하고 농지소유자격을 부여함(주식회사 제외).
  - 1998년 농업법인의 설립 근거가 농업농촌기본법으로 이관됨.

## 2.2. 기업농의 동향

- 기업농에 관한 통계의 부재로 대략의 동향도 파악할 수 없으나, 통계청에서 2000년에 조사한 농림어업사업체통계를 통하여 약간의 시사를 얻을 수 있음.
  - 농업총조사에서는 1995년까지 개인농가와 준농가(학교, 정부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기타)로 구분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개인농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준농가가 총조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농림부에서 조사해 오던 농업법인경영체 조사를 통계청에서 이관 받았으며, 2000년에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총조사를 실시한 이후 농업법인사업체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농업법인사업체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2000년 당시 농가 이외의 준농가 범주에 속하는 농업경영체는 총 8,060개이며, 그 중 운영 중인 곳은 5,575개로 조사되었음. 설립 내역을 보면, 영농조합법인 5,986개, 농업회사법인 1,667개, 일반 회사법인 114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87개, 생산자단체 72개, 학교 129개, 기타 5개 등임.

표 1-2.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체 현황, 2000

단위: 개, %

| 구 분     | 합 계   |       | 운영중   |       | 사 업<br>준비중 | 유고 사업체 |       |     |      |
|---------|-------|-------|-------|-------|------------|--------|-------|-----|------|
|         |       | 비율    |       | 비율    |            | 소 계    | 휴 업   | 폐 업 | 소재불명 |
| 소 계     | 8,060 | 100.0 | 5,575 | 69.2  | 678        | 1,807  | 1,345 | 244 | 218  |
| 영농조합법인  | 5,986 | 74.3  | 3,852 | 64.3  | 629        | 1,505  | 1,129 | 194 | 182  |
| 농업회사법인  | 1,667 | 20.7  | 1,356 | 81.3  | 45         | 266    | 197   | 39  | 30   |
| 일반회사법인  | 114   | 1.4   | 86    | 75.4  | 4          | 24     | 13    | 9   | 2    |
| 국가, 지자체 | 87    | 1.1   | 87    | 100.0 | 0          | 0      | 0     | 0   | 0    |
| 생산자단체   | 72    | 0.9   | 65    | 90.3  | 0          | 7      | 4     | 1   | 2    |
| 학 교     | 129   | 1.5   | 126   | 97.7  | 0          | 3      | 2     | 1   | 0    |
| 기 타     | 5     | 0.1   | 3     | 60.0  | 0          | 2      | 0     | 0   | 2    |

자료: 통계청, 『2000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 현재 운영 중인 기업적 농업경영체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농업법인: 현재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중심으로 출자하고 그들이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구성된 요건을 완화해 나가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산업자본을 유치하고 기업체의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사업규모와 사업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명실 공히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공기관 또는 제3섹터 방식의 농업경영: 공기관이란 이미 준농가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각종 농업 관련 기관을 말하며, 현재는 주로 시험연구를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실정임.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농협 등과 제3섹터 방식으로 위탁영농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지자체가 공기업에 출자하여 농지보전 목적으로 휴경농지 등을 경작해야 한다는 요구가 농촌 현장에서 대동하고 있음.
  - 기업의 농업경영: 경종농업에서는 제도적으로 기업의 농지소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농이 성립되지 못하고 있음. 다만, 간척지에 대해서는 농지개혁법 이후 소유 제한이 예외로 취급되어 비농민의 소유가 가능하였으나, 간척지의 기업농은 대부분 1990년대 중반까지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 있던 농지를 농업인에게 분양함으로써 현재는 소수의 농장만이 운영되는 실정임. 한편, 축산경영에서는 1970년대부터 기업축산이 허용되어 기업농이 활발한 편이지만, 최근 들어 축산농가의 소득 보호 측면에서 진입규제가 강화됨으로써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II. 기업농의 실태와 가능성

### 1.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

#### 1.1. 농업법인의 제도적 체계

- 농업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을 근거로 삼아 설립되며, 제도의 취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모화에 의한 대규모 경영체를 육성하여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음.
  - 영농조합법인(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으로 소득 향상
  - 농업회사법인(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며, 1990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소규모 영세농의 협업농으로 성격이 규정되었으나, 1993년 및 1994년의 법 개정으로 설립 요건, 조합원 자격, 사업 내용 등이 크게 확충됨.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법인 형태에 따른 의결권의 형태임.
  -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이 모두 1인 1표씩 동일함.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 비농업인의 자본 출자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가짐.
  -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농조합법인은 구성원의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의 권한이 큼.



표 2-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격</li> <li>· 법적근거</li> <li>· 설립자격</li> <li>· 발기인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업적 농업경영</li> <li>·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li> <li>·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li> <li>· 농업인 5인 이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적 농업경영</li> <li>·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li> <li>·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li> <li>· 합명(2인), 합자(유무한 각1인) 유한(2~50인), 주식(3인)</li> </ul> |
| · 출자제한                                                                                                   |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 비농업인의 출자액의 합계는 총출자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주식회사는 1/3)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권</li> <li>· 농지소유</li> <li>· 타법 준용</li> <li>· 설립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1표</li> <li>· 소유 가능</li> <li>·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li> <li>· 농업인 자율적으로 설립·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지분에 의함</li> <li>· 소유 가능(주식회사는 불가)</li> <li>·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li> <li>· 좌동</li> </ul>                                |

표 2-2. 회사법인의 종류별 특성

| 구 분      | 합 명 회 사     | 합 자 회 사       | 유 한 회 사     | 주 식 회 사     |
|----------|-------------|---------------|-------------|-------------|
| 구성원      | 무한책임사원      | 유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 주주          |
| 구성원수     | 2명 이상       | 유무한 각1인 이상    | 2~50명       | 발기인 3인 이상   |
| 자본금      | 2,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상  |
| 회사의 기관   | 사원총회, 이사회   | 사원총회, 이사회     | 사원총회, 이사회   | 주주총회, 이사회   |
| 이사, 감사 수 | 별도규정 없음     | 별도규정 없음       | 이사,감사 1인 이상 | 이사,감사 1인 이상 |
| 의결권      | 출자좌수당 1표    | 출자좌수당 1표      | 출자좌수당 1표    | 1주당 1표      |
| 지분양도     | 타사원의 과반수 동의 | 무한책임사원 전원 동의  | 타사원 전원 동의   | 무제한 양도 가능   |
| 정관공증     | 공증 불필요      | 공증 불필요        | 공증 필요       | 공증 필요       |
| 대표선임     | 사원중에서 선임    |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선임 | 사원 중에서 선임   | 이사 중에서 선임   |

## 1.2. 농업법인 운영 실태(2002년 통계청 조사결과)

### (1) 설립 및 운영 개황

- 2002년 12월 말 현재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5,598개로 전년 대비 431개 소(8.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영농조합법인은 4,315개가 운영 중이고, 농업회사법인은 1,283개가 운영중임.
- 운영 중인 농업법인 중 2,179개(37%)가 외형만 법인이고 실제로는 출자 농가의 개인운영 형태임.

표 2-3. 농업법인 운영실태, 2000-2002

단위: 개, %

|        | 운영중   | 출자자 개별운영 |
|--------|-------|----------|
|        |       |          |
| 2000   | 5,208 | 1,842    |
| 2001   | 5,167 | 2,021    |
| 2002   | 5,598 | 2,179    |
| 영농조합법인 | 4,315 | 1,662    |
| 농업회사법인 | 1,283 | 517      |

자료: 통계청, 2002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이하 표에서 같음.

### (2) 출자자 및 출자금

- 2002. 12월 말 현재 총 출자자수는 63,251명으로 대부분이 농업인(94.5%)이며, 법인당 출자자 수는 평균 18.6명(영농조합법인 22.4명, 농업회사법인 5.4명)임. 또, 출자금은 6,871억원(법인당 202백만원)이며, 현금출자 73.1%, 현물출자 26.9%로 구성됨.
- 자체 출자금이 정부보조금과 융자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정 자립도가 취약함.
- 농업법인당 평균 정부보조금은 237백만원이며, 정부융자금 잔액은 348백만원, 반면 출자금은 정부지원의 34.5%인 202백만원임.

표 2-4. 농업법인의 출자자 수 및 출자금 현황, 2002

단위: 개, 명, 백만원, %

|                | 출 자<br>법인수 | 출 자 자 수           |                  |                |           | 출 자 금(자 본 금)       |                   |                   |          |
|----------------|------------|-------------------|------------------|----------------|-----------|--------------------|-------------------|-------------------|----------|
|                |            | 계                 | 농업인              | 비농민            | 법인당       | 계                  | 현금                | 현물                | 법인당      |
| 합 계<br>(구 성 비) | 3,407<br>- | 63,251<br>(100.0) | 59,782<br>(94.5) | 3,469<br>(5.5) | 18.6<br>- | 687,137<br>(100.0) | 502,485<br>(73.1) | 184,652<br>(26.9) | 202<br>- |
| 영농조합법인         | 2,647      | 59,161            | 55,948           | 3,213          | 22.4      | 563,416            | 420,245           | 143,171           | 213      |
| 농업회사법인         | 760        | 4,090             | 3,834            | 256            | 5.4       | 123,721            | 82,240            | 41,481            | 163      |

## (3) 종사자 수

- 2002년 12월 말 현재 농업법인 종사자 수는 총 26,149명(사업체당 8명)이며, 그 중 상근종사자는 17,783명(68.0%)이고, 임시 및 일일종사자는 8,366명(32.0%)임.
- 종사자 규모별로는 상근종사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가 2,091개(61.2%)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50인 이상의 사업체는 21개(0.6%)에 불과함.

표 2-5. 농업법인의 종사자 수, 2002

단위: 개, 명, %

|                   | 사업체수       | 종사자<br>합 계        | 평 균      | 상 근 종 사 자 수      |                  |                 | 임시 및<br>일일종사자   |
|-------------------|------------|-------------------|----------|------------------|------------------|-----------------|-----------------|
|                   |            |                   |          | 소계               | 상근출자자            | 상근<br>고용종사자     |                 |
| 합 계<br>(구 성 비)    | 3,419<br>- | 26,149<br>(100.0) | 7.6<br>- | 17,783<br>(68.0) | 10,152<br>(38.8) | 7,631<br>(29.2) | 8,366<br>(32.0) |
| 영농조합법인<br>(구 성 비) | 2,653<br>- | 21,277<br>(100.0) | 8.0<br>- | 14,488<br>(68.1) | 8,294<br>(39.0)  | 6,194<br>(29.1) | 6,789<br>(31.9) |
| 농업회사법인<br>(구 성 비) | 766<br>-   | 4,872<br>(100.0)  | 6.4<br>- | 3,295<br>(67.6)  | 1,858<br>(38.1)  | 1,437<br>(29.5) | 1,577<br>(32.4) |

## (4) 경영실적

- 농업법인의 지난 1년간 총 판매액은 2조 5,498억원(사업체당 746백

만원)으로, 그 중 농업 생산부문의 판매(수입)액은 8,591억원(33.7%)이며, 농업 생산이외 부문의 판매액은 1조 6,908억원(66.3%)임.

- 농업 생산 이외 부문에서는 농축산물가공업(28.9%)이 가장 많았고, 농축산물유통업(21.3%), 기타 사업수입(11.3%) 등의 판매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6. 농업법인의 판매액, 2002

단위: 개, 백만원, %

|                   | 합계                   | 농업<br>생산          | 농업생산이외 사업           |                   |                   |                  |                   | 사업체당     |
|-------------------|----------------------|-------------------|---------------------|-------------------|-------------------|------------------|-------------------|----------|
|                   |                      |                   | 소계                  | 가공업               | 유통업               | 서비스업             | 기타                |          |
| 총 판매액<br>(구 성 비)  | 2,549,836<br>(100.0) | 859,082<br>(33.7) | 1,690,754<br>(66.3) | 736,228<br>(28.9) | 543,670<br>(21.3) | 122,873<br>(4.8) | 287,983<br>(11.3) | 746<br>- |
| 영농조합법인<br>(구 성 비) | 2,150,527<br>(100.0) | 717,228<br>(33.4) | 1,433,299<br>(66.6) | 608,198<br>(28.3) | 478,444<br>(22.2) | 83,537<br>(3.9)  | 263,120<br>(12.2) | 811<br>- |
| 농업회사법인<br>(구 성 비) | 399,309<br>(100.0)   | 141,854<br>(35.5) | 257,455<br>(64.5)   | 128,030<br>(32.1) | 65,226<br>(16.3)  | 39,336<br>(9.9)  | 24,863<br>(6.2)   | 521<br>- |

- 2002년도 결산법인의 자본대비 부채 비율은 229%이며, 전체의 30.8%가 결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결산법인의 전년 말 현재 법인당 자산은 1,177백만원, 부채는 819백만원이고, 자산 및 자본 규모별로는 1억 이상 5억원 미만인 법인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부채 규모별로는 1억원 미만이 가장 높음.
- 2002년도 결산법인의 법인 당 당기순이익은 25백만원에 불과하나, 결손 법인을 제외하면 59백만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법인(522개)이 가장 많았으나, 10억원 이상인 법인(508개)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업이익은 적자 또는 1억원 미만인 법인(88.2%)이 대부분이었으며, 5억원 이상인 법인은 1.0%에 불과함.

표 2-7. 농업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 현황, 2002

단위: 개, 백만원

|        | 결 산<br>법인수 | 법 인 당 |     |     |
|--------|------------|-------|-----|-----|
|        |            | 자 산   | 부 채 | 자 본 |
| 합 계    | 1,787      | 1,177 | 819 | 358 |
| 영농조합법인 | 1,530      | 1,165 | 820 | 345 |
| 농업회사법인 | 257        | 1,251 | 817 | 434 |

표 2-8.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2002

단위: 개, 백만원, %

|        | 법인수              |               | 법 인 당      |         |         |         |
|--------|------------------|---------------|------------|---------|---------|---------|
|        |                  | 결 손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결손제외    |
| 합 계    | 1,787<br>(100.0) | 551<br>(30.8) | 1,236<br>- | 35<br>- | 25<br>- | 59<br>- |
| 영농조합법인 | 1,530            | 458           | 1,227      | 32      | 24      | 56      |
| 농업회사법인 | 257              | 93            | 1,293      | 50      | 26      | 82      |

## (5) 회계장부 기장

- 농업법인 중 결산서를 작성하는 법인은 52.5%(영농조합법인 57.8%, 농업회사법인 33.8%)에 불과함. 간이장부를 작성하는 법인과 미기장 법인은 각각 25.0%, 22.6%임.

표 2-9. 농업법인의 회계장부 작성여부, 2002

단위: 개, %

|                   | 합 계              | 결산서             | 간이장부          | 미기장           |
|-------------------|------------------|-----------------|---------------|---------------|
| 합 계<br>(구 성 비)    | 3,407<br>(100.0) | 1,787<br>(52.5) | 851<br>(25.0) | 769<br>(22.6) |
| 영농조합법인<br>(구 성 비) | 2,647<br>(100.0) | 1,530<br>(57.8) | 616<br>(23.3) | 501<br>(18.9) |
| 농업회사법인<br>(구 성 비) | 760<br>(100.0)   | 257<br>(33.8)   | 235<br>(30.9) | 268<br>(35.3) |

## 2. 기업적 농업경영의 사례

### 2.1. 도작경영

#### (1) 현대건설 서산간척지농장; 항공직파를 채택한 초대형 벼농장

- 충남 서산시 천수만의 간척지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집념으로 현대건설이 1980년부터 1995년 6월까지 약 15년 6개월에 걸쳐 간척농지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농장이며, A지구와 B지구로 나뉘어 총 매립면적 15,594ha 가운데 농지면적은 10,050ha(3,040만평)이고 담수호 면적이 4,580ha(1,385만평)임.
  - 경지정리 계획을 1.5ha 정도로 하여 대규모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1986년부터 일부 개답지에서 벼 시험재배를 시작하여 1996년 완공 시에는 약 절반 정도가 일반답 수준의 생산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따라서 1996년 준공과 동시에 전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됨.
- 서산간척지의 농업경영은 2001년까지 현대건설 영농부에서 담당하였으며, 영농이 본격화된 1998년의 정규사원은 영농직 49명과 기타(양수, 정비, 항공, 시험, 관리 등) 23명 등 총 72명이었음. 당시 A지구는 벼를 재배하여 1인당 50만평씩을 관리하였으며, B지구는 보리와 밀을 재배하여 1인당 100만평씩을 관리하였음.
  - 벼농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벼농사와 같은 항공직파를 채용하였으며, 자탈식 대형콤바인으로 수확한 벼를 자체 건조·정미시설에서 가공하였음.
  - 서산농장은 기업농으로 간주하여 생산된 쌀은 정부수매는 물론 시판도 허용되지 않아 현대그룹 계열사를 통하여 소비하였음.
  - 2000년의 쌀 생산비(토지용역비 제외)는 자체 분석 결과 정곡 80kg 당 45천 원 수준으로 알려짐.

-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금융위기 영향으로 현대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서 서산간척지를 매각하기에 이룸. 이에 현대건설 영농부 직원 62명과 기타 10명이 출자하여 2001년 1월에 합자회사 「현대서산영농법인」을 설립하고, 출자금으로 매입한 농지 335ha와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지 약 7천ha를 경영하기 시작함.
  - 2003년에는 소유지 416ha와 위탁농지 2,600ha 등 총 3,016ha를 경작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직원 10명을 감원하였으나 쌀 생산비는 80kg 당 약 8만원 정도로 추정됨.
  - 현대건설의 농지 매각으로 작업수탁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영농법인은 잉여금을 배당하지 않고 농지를 매입하고 있음
  - 쌀은 자체브랜드(기러기오는쌀)를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임.

표 2-10. 현대서산영농법인의 쌀 생산비

| 구분          | 단위     | 2002년   |         |         | 2003년   |         |         |
|-------------|--------|---------|---------|---------|---------|---------|---------|
|             |        | 자경지     | 위탁지     | 합계      | 자경지     | 위탁지     | 합계      |
| 경작면적        | ha     | 335     | 2,958   | 3,293   | 416     | 2,600   | 3,017   |
| 수확량         | 정곡가마   | 14,940  | 102,926 | 117,866 | 20,159  | 102,471 | 122,630 |
| - 단수        | kg/10a | 354     | 276     | 285     | 384     | 308     | 322     |
| 조수입         | 백만원    | 2,736   | 12,872  | 15,608  | 3,410   | 10,823  | 14,233  |
| 총비용         | 백만원    | 1,302   | 7,382   | 8,684   | 1,429   | 8,313   | 9,742   |
| 쌀 생산비 단가(1) | 원/가마   | 73,677  |         |         | 79,442  |         |         |
| 판매 및 관리비    | 백만원    | 837     |         |         | 764     |         |         |
| 영업외 비용      | 백만원    | 1,493   |         |         | 1,435   |         |         |
| 쌀 생산비 단가(2) | 원/가마   | 93,445  |         |         | 97,374  |         |         |
| 법인세         | 백만원    | 1,018   |         |         | 600     |         |         |
| 농업소득세       | 백만원    | 634     |         |         | 800     |         |         |
| 쌀 생산비 단가(3) | 원/가마   | 102,082 |         |         | 103,898 |         |         |

주: (1)=제조원가, (2)=(1)+판매관리비+영업외비용, (3)=(2)+법인세,농업소득세

자료: 서산영농 내부자료.

## (2) 죽암농장; 대규모 경종+축산 복합영농 실현

- 죽암농장은 전남 고흥군 동강면 죽암만을 매립한 간척지로, 대규모농장을 실현하려는 고 김세기 씨의 집념으로 조성되어 현재 제1농장(고흥군 동강면) 60ha와 제2농장(고흥군 남양면 장담리) 90ha를 합쳐 총 150ha(약 45만평)을 경영하고 있음.
  - 고흥군 죽암만의 매립 총면적은 912ha로서 1965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97년에 준공하였으며, 개담면적 626ha 가운데 476ha는 지역 주민에게 유상분배하였고 90ha는 정부에 기부하였으며, 60ha를 직영농장(장월농장)으로 경작하고 있음.
  - 고흥군 남양면 장담리의 간척지 90ha는 지역 주민의 분양 없이 전체를 직영(오동농장)하고 있음.
- (주)죽암영농은 현재 JA건설주식회사의 계열회사로서 주요 사업은 양곡생산과 도정공장 운영, 그리고 축산경영과 퇴비 제조임. 김세기 씨는 경영철학에 의해 경종과 축산의 복합영농이 추진되어 토양실험 등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있음.
  - 벼농사 150ha는 일반적인 이앙농법으로 재배하며 전작업이 기계화되어 있음. 영농배수가 양호한 논에는 답리작으로 보리를 재배하고, 사료작물의 시험재배도 추진함.
  - 연간 쌀 800톤, 보리 60톤 정도를 생산하여 농장 내 자체 도정공장에서 가공하여 주로 전남 도내에 판매함. 특히 저투입환경농업시범단지로 지정되어 저공해 간척지 특미라는 호평을 얻고 있음.
  - 축산경영으로 한우 비육우와 번식우를 포함하여 약 300여 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수수, 옥수수, 이탈리아그라스를 사료로 급여하여 육질을 개선하고 있음.
  - 농장의 아이디어로 개발한 톱밥과 우분을 사용한 고품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경종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 2.2. 축산경영

### (1) 수원목장; 상시사육 1,500두로 고급육 생산

- 수원목장은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에 소재한 한우 목장이며, 경영주 1명과 상시고용 15명으로 비육우 상시사육 두수 1,500두 규모를 사육하는 기업형 축산경영임.
  - 경영주는 축산 분야의 공직생활을 거치면서 1977년에 닭, 돼지 등으로 축산경영을 시작하였으며, 1988년에 우사 2동을 건축하고 한우를 사육하기 시작하여 현재 톱밥깔집우사 19동에 상시사육두수 1,500두 이상을 경영하는 대규모 농장으로 성장함.
  - 부대시설로 관리사, 퇴비장, 건조저장고, 톱밥저장고, 기계보관 창고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인근 안성시에 번식우 전용축사를 별도로 운영하여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1994년 6월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문매장을 설치하여 수원목장 한우를 브랜드 쇠고기로 판매함.
  - 황소를 주로 비육하며, 총 사육두수의 10% 정도를 거세하여 26개월령 이상 비육하는 고급육 생산기술이 정착된 농장임.
  - 선진국 수준의 고급 냉장 숙성육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도축 후 냉장하지 않고 저온 숙성실에서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침.

### (2) 성원목장; 국내 최초의 목장우유 생산

- (주)성원유업 회장인 강성원 씨가 1973년 경기도 안성 월정리에 목장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60ha의 초지와 400두의 젖소를 경영하는 기업으로 발전함.
  - 목장과 유가공을 통합한 사업체로서 가족 중심으로 경영하고 있으며, 장남이 회사 경영을, 차남이 목장 운영을, 그리고 막내아들이 우유 판매를 담당하고 있음.

- 창업자인 강성원 씨는 1973년까지 제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낙농계의 전문가로서 서울우유협동조합장, 한국유가공협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장, 한국종축개량협회장 등을 역임함.
- 1994년 12월에 ‘강성원우유’라는 브랜드로 시판하여 목장우유 시대의 효시라고 일컬어짐.
  - 1993년 UR 타격을 계기로 강성원 씨는 외국 우유에 맞서 고품질의 우유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1994년 9월에 성원유업을 창업함.
  - 당시 강성원우유는 자체 생산된 원유 5톤과 이천 소재 와우목장이 생산하는 원유 2톤을 5년간 제공받기로 하고 고급우유라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는데 성공한 사례로 알려짐.
  - 성원유업의 판매전략은 철저한 고가전략으로, 압구정동 등을 비롯한 서울 강남의 부유층을 주된 고객으로 확보한 결과 IMF 때도 큰불황을 겪지 않고 우유소비가 증가하여 최근에는 하루 15톤 정도를 판매하는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있음.

### (3) 선진축산; 양돈 계열화사업의 선구자

- 선진축산은 1973년 경기 이천에 제일종축농장을 설립한 이래 30여년 동안 기업 양돈경영을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 선진사료, 선진브릿지랩(공동방역망 업체), 제일종축, 선진한마을(계열화농장) 등으로 생산 체인을 구축하여 ‘크린포크’ 브랜드로 시판중임.
  - 종돈 부문 7개 회원농장(모돈 3,800두), 비육 부문 287개 회원농장(모돈 3만 2천두)으로 상시사육 두수는 100만두 수준임.
  - 2003년 9월에 비육돈 부문에서 국내 최초로 HACCP 인증(미국 이글사)을 받기까지 품질 향상에 노력함.
- 전문 종돈업 육성 지원사업에 힘입어 1995년 이후 종돈에서도 생산 품종에 따라 전문화하여 회원농장의 원료돈 공급 체계를 확립함.

- GGP(단양GGP: 원원종 농장), GP(백색 F1 모돈 농장: 선진육종, 제천, 우당, 한세, 덕성, 가보서관농장)로 나누어 순종과 F1 생산 일을 분담하고, PS( 번식돈 농장: 제일종축, 유전자원, 모돈 계열농장, SJ Farm 농장), CS(비육돈 위탁 농장: 100여 농장)등 약 300여 개의 농장에서 연간 약 70만두의 돼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
- 도축 가공은 HACCP 인증을 받은 안성, 창녕, 정읍, 충주 등에서 도축 및 가공 작업을 실시하여 전국 어디서나 크린포크의 원료돈 품질 기준에 합격한 비육돈을 도축 가공처리 체계를 갖추.
- 매일 크린포크 원료돈 1천 두가 도축 가공 처리되어 현대백화점, 삼성플라자, 홈플러스, 전국의 주요 대리점과 대형 전문 음식점에서 판매됨. 크린포크는 연간 지육으로 2만 4천 톤을 공급하여 약 7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함.

#### (4) 농업회사법인 조인(주); 수도권 최대의 계란 계열화업체

- 농업회사법인 조인(주)는 산란계 분야의 수도권에 계란을 공급하는 계열농장임(계란생산량 1일 65만개, 월 2000만개).
- 경기 용인의 본부GPC를 비롯하여 GPC 2개소, 육성계농장 4개소, 부화농장 3개소, 실용계농장 5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140억원 정도임.
- 초기에는 개인기업으로 운영하였으나, 2000년에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으로 등록하여 운영중임.
- 1979년 8월 서울 내곡동에 강남 부화장 설립을 시작으로 하여 용인농장 및 용인부화장 건립(1982), 경기도 평택에 송탄 육성농장 건립(1985), 송탄 농장 건립(1987), 충남 아산에 둔포농장 건립(1989)으로 계란 생산량을 증가시켜 왔으며, 1992년 12월에는 경기도 평택에 강남유통 GP센터를 설립하여 양계산물 유통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함.

- 1993년 5월에 경기도 평택에 송탄 1부화장 건립하고 1994년 12월 송탄 2부화장을 건립하였으며, 1996년 10월 경기도 여주에 첨단시설을 갖춘 고밀도 산란계 가남농장을 건립함.
- 1997년 11월 가남농장 내에 인라인 시스템을 갖춘 강남 유통 GP센터를 추가적으로 건립하여 계란 등급화와 브랜드화를 선도함. 2000년 10월에는 (주)조인에서 생산된 계란이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 사용상품으로 선정됨.

#### (5) 주식회사 하림; 육계계열화 사업의 선구자

- 주식회사 하림은 국내 육계 시장의 25%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계열화업체로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정도임. 1997년에 한국증권업협회 장외등록(코스닥)한 상장회사임.
  -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회사로 농장, 공장, 시장을 하나로 묶는 삼장통합 수직 계열화를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로 축산물로서는 처음으로 1995년에 KS마크를 획득함.
- 1978년 종계장인 황등농장에서 출발하여 1990년 10월에 하림(주)을 설립하고 전북 익산에 본공장 공사를 착공한 이후 사업을 확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1986년 육계계열화를 시작하여 (주)하림식품을 설립하고, 1988년 농림부로부터 육계계열화업체로 지정됨.
  - 1991년 무역업 허가를 받았으며, 김제 만경 농공단지 배합사료 공장 입주를 확정하였음. 또한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부화장 연구지점 설치공사를 착공하였으며, 7월에는 도계장을 시험 가동함.
  - 1992년에는 김제 배합사료 공장을 준공, 1993년에는 하림(주)과 하림식품(주)을 합병하고 도계 2차 라인을 증설, 1994년에는 배합사료 공장 펠렛을 증설함.
  - 1995년 종계 직영농장을 준공, 1996년에는 임실 종계농장과 삼기 부화장을 준공, 1997년에는 육가공 신축공장을 준공함.

## 2.3. 원예경영

### (1) 구미원예수출공사; 공기업에 의한 농업경영의 가능성

- 1996년 농림부의 화훼계열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00년부터 화훼를 경영하고 있는 공기업임.
  - 구미첨단화훼농단은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의 낙동강변 일원에 7만 5천여 평의 온실을 건립토록 계획되어, 1단계 경영수익사업과 2단계 농가소득 증대사업은 1997.9~2000.10월까지 조성이 완료되어 사업이 운영 중이며, 3단계사업은 임대 및 분양사업을 계획 중임.
  - 1997년 구미시가 출자하여 경북원예개발공사로 법인을 설립한 후 2000년 6월 구미원예수출공사로 변경하였으며, 조직으로 사장, 경영개발팀, 생산관리팀, 무역팀을 두고, 직원 14명과 영농 근로자 75명을 상시 고용하고 있음.
- 공사 직영농장은 1999년 8월에 유리 온실 25,000평과 부속시설을 준공하고, 1999년부터 스프레이국화를 생산하여 수출함.
  - 생산 시설로는 모본장, 삽목장, 육묘장, 재배포장, 양액공급실, 자동환경 제어실, 포장시설, 난방시설 및 저온저장고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재배 방법은 토경 관비재배(Fertigation)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재배작목은 스프레이 국화 약 20여 품종을 재배하는데, 연중 4기작 재배로 약 1천 2백만 송이를 수출함.
- 농가분양사업으로 구미원예농단(유한회사)을 설립하여 2000년 10월에 유리 온실 3만평을 완공하고 국화 19농가(17,500평), 장미 8농가(8,400평), 선인장 2농가(3,000평)에 분양함.
  - 회원 농가들이 생산한 화훼에 대해서도 공사에서 수출을 담당함. 스프레이국화는 연간 840만 송이, 장미는 연간 450만 송이, 접목선인장은 연간 60만 개를 수출함.

표 2-11. 구미원예수출공사와 구미원예농단의 경영 개황

|                                             | 구미원예수출공사<br>(지방공사)                                                                  | 구미원예농단 국화농장<br>(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
|---------------------------------------------|-------------------------------------------------------------------------------------|-------------------------------------------------------------------------------------|
| 발족 연도                                       | 1997.9월 (98.8 수출 시작)                                                                | 2000.10월                                                                            |
| 투자예산                                        | 183.5억원<br>(구미시 출자 20%, 용자 80)                                                      | 78.8억원(농가자 부담 20%, 용자 40, 보조 40)                                                    |
| 시설 면적                                       | 25,000평(벤로형 유리온실)                                                                   | 17,500평(경질판 온실)                                                                     |
| 용자금 내역                                      | 148.8억원: 3년 거치 17년 균분상환, 연리 4%<br>* 부채대책 적용 못 받음                                    | 31억원: 3년 거치 17년 균분상환, 연리 4%<br>* 부채대책 적용(연리 1.5%)                                   |
| 용자원금 및 이자상환                                 | 연 13억원 상환                                                                           | 연 4.9억원 상환                                                                          |
| 수출실적                                        | 생산의 90%수출<br>03년 4.8백만불                                                             | 생산의 95%수출<br>03년 2.5백만불                                                             |
| 생산실적                                        | 스프레이 국화 연 4기작<br>03년 1,318만 송이 생산                                                   | 스프레이 국화 연 4기작<br>03년 970만 송이 생산                                                     |
| 경영실적                                        | 영업수익 7,103백만원<br>영업비용 6,853백만원<br>당기순이익 349백만원                                      | 영업수익 3,296백만원<br>영업비용 2,960백만원<br>당기순이익 336백만원                                      |
| 영업수익/투자<br>* 구미원예공사와<br>구미원예농단의<br>동일 지원 가정 | 평당영업수익 284,120원/평<br>평당투자 734,000원/평<br>평당영업수익/평당투자 = 38.7%<br>* 유리 온실 내구연한: 20년 이상 | 평당영업수익 188,343원/평<br>평당투자 437,000원/평<br>평당영업수익/평당투자 = 43.1%<br>* 경질판온실 내구연한: 15년 이상 |
| 경영방식                                        |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                                                                       | 유한회사로 사원총회에서 의사결정                                                                   |

자료: 구미시 내부 자료.

## (2) 농산무역(주); 파프리카 생산자가 설립한 수출회사

- 농산무역은 1999년 7월에 파프리카(단고추)를 재배하는 14개 영농조합 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며, 전북 김제의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 선별·포장·수출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주주는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며, 14개 영농조합의 시설재배 규모는 33ha(10만평)임.
  - 파프리카 산지유통센터는 부지면적 3,000평에 유통센터 작업장, 입고 저온저장고, 출하대기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파프리카 자동선별기, 비파괴당도측정선별기 등을 갖추고 있음.
- 생산과 유통의 분업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첨단시설의 산지유통센터에서 균일한 상품의 규격화를 완성하여 수출 및 내수 시장에서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농산무적이 파프리카의 재배계획에서 출하까지의 모든 과정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수급조절하며, 농약잔류 안전성과 검역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관리함.
  - 지속적으로 일본 시장을 개척하여 자스코(연간 800톤, 약 72억원)와 다이에이, 이토요카도 등 대형 유통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함.
  - 현재 한국산 파프리카의 연간 일본 수출량 약 1만 톤 중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연간 7천 톤 수출을 목표로 추진 중임.

## (3) (주)로즈피아; 장미 생산자의 공동계산·수출회사

- 2000년 7월 전남북의 장미 재배농업인 15명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주로 공동 선별·포장·수출사업을 담당하며, 부수적으로 생산부문의 공동사업도 추진중임.
  - 출자자는 전남북의 12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장미 재배규모는 유리 온실 18.3ha임.

- 공동 선별·포장센터에 선별장 330평, 냉장저장고 100평, 냉동탑차, 포장기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임직원 40명(상시고용 포함)으로 1일 작업량은 9만본 정도임.
- 2002년 출하실적은 70억원으로, 우리나라 장미 수출액의 40%인 470만 \$을 수출함.
-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노력
  - 고품질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지도(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와 제휴), 연중 출하시스템 및 예냉처리기술 확립, ISO국제품질규격 획득 등을 공동으로 추진함.
- (주)로즈피아는 회사 형태는 주식회사이지만 대표를 순환하여 맡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출자자의 합의제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임.

## 2.4. 식품회사의 계약재배

### (1) 종갓집 김치

- (주)두산 식품 BG(Business Group)는 김치사업(종가집 김치)과 패스트푸드, 사료 등 총 3개의 사업군을 운영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가정용 상품김치의 브랜드인 종갓집 김치는 1987년 첫 생산을 시작으로 1991년 김치에서 유일하게 KS 마크를 획득하였으며 1995년에는 세계 일류화 상품 및 한국전통식품 인증을 받았음.
- 종갓집 김치는 1988년 일본 시장으로 처음 수출된 이래 현재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네덜란드, 동남아, 홍콩, 미국, 중국, 캐나다 등 세계 20여 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음.



- 종갓집 김치의 원료구매방식은 중간구매업자를 통한 간접계약재배 형식을 취하고 있음. 즉 구매업자가 직접 농민이나 지역 단위농협을 통해 김치의 원재료를 수매계약하고 이 계약을 바탕으로 종갓집 김치는 정해진 규정에 합격한 김치의 원재료만을 구입함.
  - 배추는 계절별로 산지를 배분하여 수매하고 있음. 즉, 봄(전남 영암, 충남 온양, 해미), 여름(강원 정선, 강원 태백), 가을(전남 영암, 충남 온양, 홍성), 겨울(전남 해남) 등임.
- 종갓집 김치는 안정적인 원료 조달을 위해 배추유통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으며, 원료 생산을 위한 직영농장은 운영하지 않음. 다만, 김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실험용으로 연구소에서 소량의 배추를 재배하는 정도임.

## (2) 풀무원

- 자연건강생활기업 풀무원은 1981년 5월 ‘풀무원 무공해 농산물 직판장’이라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야채 가게에서 출발하였음.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1984년 5월 풀무원식품(주)으로 법인화하여 1995년 상장회사로 되기까지 10여 년 동안 두부, 콩나물로 대변되는 생식품과 장류, 면류, 유지류, 건강보조식품, 먹는 샘물, 다이어트, 화장품, 생활용품, 유통 등의 사업을 전개해 왔음.
  - 최근에는 내추럴홀푸드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하여 푸드머스, 문화사업(김치박물관), 외식사업, 바이오산업 등에 진출하여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다각화와 경영의 합리화 및 전략정보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음.
- 풀무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원료인 국산 콩은 산지 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하여 수매하고 있음. 예를 들면, 콩나물이나 두부에 사용되는 국산 콩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또는 각 지역별 농업시험장에서

육중한 우수 원료를 선발 보급하여 직접산지관리 재배하여 일괄 농협에서 수집, 정선, 포장을 거쳐 전수검사를 실시한 후 풀무원 규격에 합격한 원료만을 사용함.

- 풀무원의 원료사용 기준은 독성물질의 잔류성분으로부터 안전한 원료를 선별, 사용하고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재배된 원료는 사용하지 않음.

○ 풀무원은 풀무원 농장에서 생산한 유기농산물 판매로부터 출발했으나, 현재는 원료조달을 위한 직접재배 혹은 농장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며, 약 250여 농가의 농산물을 계약재배로 구매하고 있음.

- 국내 유기농산물의 안정적 조달과 환경농업의 체험을 위해 2003년부터 충청북도 괴산군에 총 6만평의 규모로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풀무원 농장을 건설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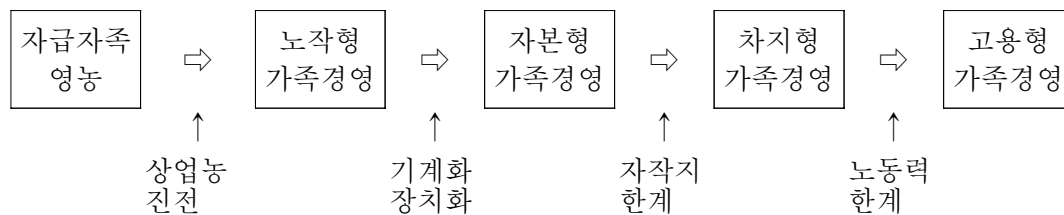
### 3. 기업농의 가능성과 전망

○ 우리나라 농업은 앞으로도 가족농 체제가 근간이 될 것이지만, 농업의 여건은 다양한 경영체를 용인해야 하는 상황임. 특히 농가의 농업경영체로서의 성격이 약화되면서 지역농업을 담당할 새로운 경영 주체로서 생산조직이나 농업법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

- 미래의 가족농은 종래의 자기완결형 경영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노동력 이용이나 시장 대응을 비롯하여 생산의 부분 과정, 기술이나 자금의 확보 등등의 다방면에서 경영 외부로부터의 기능을 수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가족농은 농기업(agri-business)과 다방면에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기업적 농업경영의 시비를 논하기보다는 가족농과 이들 경영체의 사이에 어떠한 관계나 시스템을 형성시켜 나아갈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림 2-1. 가족농의 변화 단계



- 기술진보와 상업화는 농업경영에서도 가족농 이외의 경영 형태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농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임.
  - 생산력 구조의 변화: 과거에는 생산력이 소농에 적합하여 가족경영이 활력을 가졌으나, 생산력 구조의 변화와 함께 기업조직이 무리 없이 진입할 수 있음. 양돈과 양계 등 축산경영은 이미 기업농의 방향으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경종농업에서도 고도의 자본과 기술의 집적으로 영농이 가능한 신선 채소류의 공장식 주년생산 체제는 기업농화할 가능성이 큼.
  - 경영기술의 요구: 상업농 시대에는 생산부터 판매 내지는 소비 동향까지 파악하고 대응하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특히 마케팅 전략과 기술은 기업경영에서 유리함. 대부분의 농가가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판매는 산지유통센터를 비롯하여 유통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것도 이러한 때문임.
  - 경영체의 확대: 농가인구 감소로 가족 간의 협업 기능이 약화되면서 농가 간의 협력 내지 공동경영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개별 농가의 협업경영은 노동력은 물론 토지와 자본에 대해서도 가족소유의 범위를 초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생산 요소의 확대 뿐만 아니라 경영자 능력의 혁신이 가능함.
  - 진입규제 완화: 신규 참여로 인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존의 상속농가 외에 영농 능력과 의욕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진입할 수 있는 농업이야말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기업적 농업경영이 농업 발전에 비추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특히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첫째, 주식회사는 본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자본결합체로서 농업인의 경영 지배를 원칙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임. 다시 말해서 주식의 자유 양도에 따른 농업경영체로서의 불안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둘째, 주식회사에 의한 대규모의 농지 소유에 대한 우려임. 주식회사가 많은 농지를 소유하면 할수록 지역의 농업인을 노동자화하게 된다는 위험이 있으며, 그에 따라 지역의 고용 기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우려가 큼.
  - 셋째, 자본력을 가진 주식회사가 농지를 대규모로 구입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지역적으로 토지 투기나 농지 가격의 급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부작용이 지적됨.
  - 넷째,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지역사회의 농업 발전이나 농지 이용의 구조가 크게 바뀐다는 점임. 따라서 지역사회의 해체를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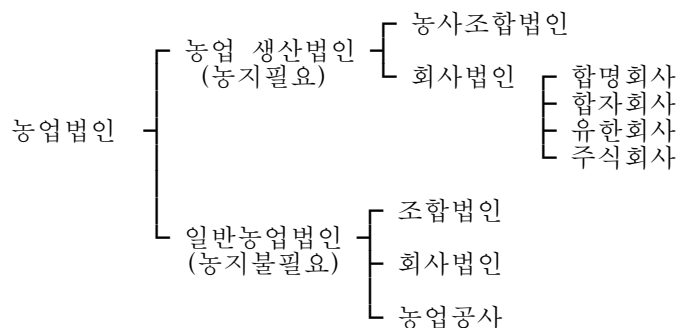
### Ⅲ. 외국의 기업농 동향과 사례

#### 1. 일본의 농업법인과 기업농 사례

##### 1.1. 농업법인 제도

- 1961년 제정된 농업기본법에서 협업경영 육성을 명시하였으며, 1962년 농지법 개정을 통하여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지소유를 인정하기 위하여 「농지법상의 농업 생산법인」의 성격을 규정함(농지법 제2조 제7항).
- 농업 생산법인의 성격
  - 기업 형태 : 농사조합법인, 회사법인
  - 사업 : 농업경영, 농업에 부수적인 임업, 기타 농업의 부대사업
  - 구성원 : 개인인 농지출자자(소유권, 사용수익권) 및 노동제공자(연간 150일 이상 종사)
  - 경영 책임자 : 경영책임자의 과반수는 상시종사자(농민)일 것

그림 3-1. 일본의 농업법인 형태



○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세제상의 혜택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유한회사는 보통 법인의 경우 37.5% 이지만, 자본금 1억 엔 이하의 유한회사로서 연간 소득이 800만 엔 이하의 경우에는 28%를 적용함.
- 소득세는 유한회사의 임원 및 종업원과 농사조합의 급여 수령자는 보수 및 급여에 대하여 과세되며, 농사조합법인의 배당액 수령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 사업세에 대해서 유한회사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며, 농사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2조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전부 만족하는 농사조합법인의 농업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② 농지 등의 재산상속

- 법인에는 상속이 없으며,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농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납세유예 제도는 제외됨.

③ 정책금융

- 농지 등 취득자금의 대출 한도액은 개인경영에 비하여 높으며, 또한 경영체육성 특별융자 제도에 의한 대부 한도액도 개인경영은 1억 5천만 엔인데 대하여 법인경영의 경우에는 5억 엔임.

④ 사회보험제도

- 유한회사와 농사조합법인은 사업주나 피고용자를 막론하고 각각 후생연금과 농림어업 단체직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 건강보험은 사업에 관계없이 가입 의무를 지니며,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가입이 가능함. 노동재해보험은 개인경영에 대해서는 노동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보험과 노동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경영의 경우도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1.2. 기업적 농업경영의 형태와 사례

### (1) 가족농 발전형

- 이시카와현(石川縣) B농장은 본래 벼농사 전업농가였으나, 1980년에 소득 증대를 위하여 가공판매사업(초밥, 절임식품)을 시작하였으며, 1988년에 유한회사를 설립하였고, 2001년에 주식회사로 변경함.
  - 구성원: 농지제공자 및 상근종사자 4명(자본금 1천만 엔)
  - 사업 내용: 농업경영(벼농사 15ha, 채소 1.5ha, 대두 1ha, 화훼 0.5ha), 농작업수탁 연 33ha, 농산물가공(유기농업쌀, 초밥, 절임식품 등)
- 도농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주주로 확보하여 자본 출자하도록 하면서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음.

### (2) 민간기업 제휴형

- 야마나시현(山梨縣) I농장은 1998년 대형식품업체 S그룹과 연계하여 동 그룹의 패밀리 레스토랑에 샐러드용 채소를 공급하기로 하고 유한회사를 설립함.
  - 구성원: 농지제공자 및 상근종사자 10명(자본금 400만 엔)
  - 사업 내용: 유기채소재배 22ha, 채소 가공
- 외식업체는 유기농산물 및 안전한 원재료의 안정 공급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법인은 규모경제에 의한 고수익을 실현함.

### (3) 민간기업 출자형

- 히로시마현(廣島縣) B농장은 2000년에 대형식품업체 K주식회사와 공동출자하여 유리 온실을 건축하고 연중 토마토를 생산하여 전량 K회사에 출하하고 있음.

- 구성원: 농업인 3인(90%), 식품업체(10%), 자본금 5천만 엔
- 사업 내용: 토마토 생산 2.87ha

#### (4) 농협 출자형

- 나가노현(長野縣) A농장은 1996년 농협 주도로 설립한 유한회사임.  
농협은 A농장에 출자와 아울러 경영인을 파견하여 경영을 담당함.
- 구성원: 5명(농지제공자, 상시종사자, 농협)
- 사업 내용: 농업경영(벼농사 6ha, 맥류 5ha, 대두 3ha, 토마토 3ha, 육우 비육 340두), 낙농헬퍼사업

### 1.3. 지역농업의 기업적 경영 사례

- 일본에서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성공하고 있는 사례는 지역의 부존자원이나 지리적 특징 등을 감안하여 생산에서 가공, 유통, 서비스 등으로 경영영역을 확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기업의 경영 주체별로 볼 때 대표적인 사례는 전업농 중심의 생산자 주도에 의한 기업적 경영, 여성·고령자 중심의 기업적 경영, 그리고 지자체·농협 주도에 의한 기업적 경영 등의 유형이 있음.

#### (1) 전업농 주도의 기업적 경영

- 이 유형은 전업농이나 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경영체가 농업생산을 중심으로 판매전략으로 소비자와의 교류, 도시농촌 교류 등을 추진함으로써, 비즈니스 영역을 생산에서 가공, 도농교류 등으로 확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임.
- 발전 과정을 보면, 먼저 생산자 주도에 의한 시설원예, 화훼, 특산품,



농산가공, 유기농업 등 고부가가치 농업을 추진하고, 다음에 농업경영체가 육성·발전하여 산지가 형성된 후, 최종적으로 소비자교류·현지견학, 직거래, 도시농촌 교류 등으로 발전하고 있음.

- 고치현 히가시츠노촌(高知縣 東津野村)의 사례
  - 쌀, 채소, 축산을 연계,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도시 주민과 직거래를 축으로 한 산지 형성
  - 저농약 쌀과 유기 채소의 직거래, 닭의 뽕밭 방목, 비육우 방목 등을 시도
  - 목재가공, 주택건설을 하는 제3섹터를 설립하는 등 농업을 복합산업화하여 지역 전체가 성장하는 사례임.

## (2) 여성·고령자에 의한 기업적 경영

- 전업농 주도의 기업적 경영과 유사하지만, 농촌여성·고령자 등 반드시 농업만으로 생계를 꾸려갈 필요성이 적은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착수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계기로 여성·고령자들이 농업에 대한 열의가 살아나고 농업 활동이 활발해지며, 이와 연계하여 농산물 가공으로 발전하거나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음식 제공, 농가 민박으로 발전하는 것이 전형적인 발전 유형임.
- 아오모리현 나가와정(靑森縣 名川町)의 사례
  - 지역 여성들이 농산물 직판장을 이용한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특산화하는 사례임.
  - 여성과 고령자가 농업경영에 적극 참가를 촉진하여 쌀만이 아니라 채소, 과수 등 원예작물에 의해 성장하는 점이 특징임.

- 기후현 메이호촌(岐阜縣 明宝村)의 사례
  - 여성 27명이 농업회사를 설립하여, 토마토케첩을 제조하고 야채를 가공하여 관내 스키장과 온천내의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등 복합산업화로 성공하고 있는 사례임.

### (3) 지자체 · 농협에 의한 기업적 경영

- 이 유형은 농촌주민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또는 농협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이 차이점임.
-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경우는 정부 보조사업을 활용하여 농산물 가공시설이나 교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또 농협이 주도하는 경우는 고부가가치 농업이나 산지 형성에 주력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기후현 시라카와촌(岐阜縣 白川村)의 사례
  -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쌀의 생산조정 작물로서 메밀을 장려하고, 지자체 직영의 메밀 가공시설에서 메밀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음.
  - 메밀꽃으로 경관을 형성하고 메밀가공품 만들기 체험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며, 특별촌민제도를 도입하여 농산물 택배를 실시하고 있음.
  - 차 공장을 각 부락별로 설치하여 차 생산을 진흥하고 있고, 햄을 특산물화하는 것도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1.4. 구조 개혁특구 제도

### (1) 도입 배경

- 구조 개혁특별구역제도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기업 활동 조장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되, 그 성과와 문제를 평가하

여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산하는 것이 목적임.

- 세금 경감이나 보조금 지급과 같은 재정조치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특징임.
- 특구제도는 2002년 12월에 제정된 ‘구조개혁특별구역법’(특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4년 4월부터 시행됨.

○ 지자체별로 농업, 교육, 의료,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시되고 있으며, 농업특구는 전국에서 30건이 인정, 4가지 유형의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음.

- ① 주식회사나 비영리법인(NPO) 등 다양한 법인의 농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특구로서, 지자체가 일정 규모의 유휴농지가 존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구로 설정한 계획을 작성, 총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함. 인정을 받으면 농지법 특례가 인정됨.
- ② 최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도시농촌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농가, NPO, 주식회사 등도 시민농원을 개설할 수 있는 특구로서, 특정 농지대부법과 시민농원정비촉진법의 특례를 인정함.
- ③ 현행 0.5ha로 되어 있는 농지취득 하한면적을 완화하는 특구로서, 소규모 농지를 도농교류용으로 확대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 ④ 농업관련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구로서, 농업 생산법인의 경영발전과 다각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음.

○ 농림수산성은 현행 특구제도가 농업경영의 효율화와 지역의 고용확보에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주식회사의 농지소유까지는 인정하지 않지만 임대방식에 의한 농업 진입의 길을 열어둠으로써 특히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농림수산성은 현재 주식회사의 농업경영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유휴농지의 감소나 고용창출 등의 효과에 주목하면서 경영계획이나 재무상황 등 구체적인 진입조건을 검토하고 있음.

- 특구방식은 농업의 제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선은 농지임대만을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농지투기를 예방하면서 기업이 가진 창의력을 농업활성화에 활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임.

## (2) 특구 신청 사례

-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신도시농업창생특구」: 도시화로 유휴농지가 확대되는 현상에 대응하여 시민과 농업·공업·상업 등 지역산업을 연계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개발·가공, 지역에서 판매·소비하는 소위 ‘地産·地發·地工·地消’의 개념으로 농업재생을 계획하고 있음. 지역의 잠재력을 살려 농지 이용과 고용기회 창출을 도모하고, 신도시농업의 실현을 기대함.
-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새마을특구」: 농업체험, 자연체험, 역사문화탐방 등 종합체험형 관광산업과 대도시권으로의 식품제공과 관련한 신규산업을 창출하는 등 도농교류를 촉진하여 3년간 관광객 5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야마나시현(山梨縣) 「와인산업진흥특구」: 포도 관련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와인회사에 의한 와인제조와 포도생산을 일체화하여 고품질 와인제조, 와인산지 브랜드 확립을 통해 와인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
- 가가와현(香川縣) 「올리브진흥특구」: 가공기업이 지역의 유휴농지에 올리브를 재배하여, 올리브의 생산에서 가공을 일체적으로 행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형태임. 2008년까지 6ha의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올리브를 재배하고, 생산·가공·관광을 포함하여 4억엔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2. 미국의 기업농 사례

### 2.1. 기업농의 지위와 성격

- 미국은 기업농에 대하여 규제적인 제도는 없으나, 농정의 근간은 가족농주의를 표방하고 있음.
  - 가족농장(family farm)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 독립자영의 농민층을 의미함. 따라서 가족농장의 경영주는 농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일부분의 차지는 인정되지만 완전차지농은 가족농장으로 인정되지 못함. 또,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력 도입도 가능하지만 총가족노동력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됨.
  - 1977년에 의회는 정부의 지나치게 광의인 가족경영의 정의에 대하여 가족경영과 소농을 구별하여 각각 보고하라고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정부로서는 농업에 거액의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가족경영의 정의를 폭넓게 적용함.
- 미국의 농장은 취미농장, 소규모 농장, 전업적 농장으로 구분되며, 기업농이란 농산물 판매액 100만 달러 이상의 농장을 지칭함. 2002년 당시 농장 수 및 판매액 비중은 다음과 같음.
  - 제1그룹: 농산물 판매액 5천\$ 미만의 농장으로 농외수입 의존율이 극히 높은 『재촌지주농장』 또는 『취미농장』임. 농장 수로는 48.8%이고 판매액 비중으로는 0.6%를 점유함.
  - 제2그룹: 농산물 판매액 5천\$ 이상 5만\$ 미만의 농장으로, 농업소득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고 보조적인 농외소득이 필요함. 농장 수의 30%, 판매액의 5.6% 점유.
  - 제3그룹: 농산물 판매액 5만\$ 이상의 전업적 농장(primary farms)으로서 농장 수의 21.2%, 판매액의 93.8%를 점유함. 그 중 판매액 5~10만\$ 농장(총농장수의 6.6%, 총판매액의 5%), 판매액 10~25만\$ 농장(총농장수의 7.5%, 총판매액의 12.7%), 판매액 25~50만\$ 농장(농장 총수의 3.8%,

총판매액의 14.2%), 판매액 50~100만\$ 농장(총농장수의 2%, 총판매액의 14.4%), 판매액 100만 달러 이상의 농장(총농장수의 1.3%, 총판매액의 47.5%).

## 2.2. 기업농의 사례

### (1) 돌(Dole)

- 1851년 하와이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의 청과기업 돌(Dole)은 세계 90개국에서 약 6만 명의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2002년 매출액이 44억 달러에 달하는 품질을 가장 중시하는 기업임.
  - 미국에 본사가 있는 돌은 R&D센터를 본사 부근이 아닌 필리핀, 라틴아메리카 등 생산 현지에 두고 있음. 그 이유는 종자 배양에서부터 현지화가 이루어져야 현지 기후 풍토에 적합한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돌이 자랑하는 야생 몽키바나나, 스위트오바나나 등은 모두 이런 현지화의 결실로 꼽힘.
- 돌은 이상기후 등으로 수확량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원료조달과 고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 돌소유의 농장과 계약농장 지역을 넓혀 가고 있음.
  - 돌 농장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바나나농장은 온두라스, 콜롬비아, 에콰도르, 필리핀의 농장을 합쳐 3만 8,200ha에 이르며, 파인애플 농장은 하와이, 온두라스, 필리핀, 태국 등에 2만ha가 있음. 특히 필리핀의 민다니오에 있는 연간 42만t의 바나나를 생산할 수 있는 바나나농장은 넓이가 1만 2천ha에 달함.
- 품질관리를 가장 중요시하는 돌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이동식수확포장(MMBP; Mini Mobile Banana Packing Process)을 자체 고안, 운영하고 있으며 릴레이 크로핑(Relay Cropping)이라는 일종의 휴경영

농 방법도 시행하고 있음. 이동식 수확포장 방식은 생산된 상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근로자 6~7명이 차량을 타고 다니며 생산 현장에서 수확과 동시에 포장을 하는 것임.

- 릴레이 크로핑은 한 번 수확한 바나나나무는 베어 버리고 일정 기간 땅을 쉬게 하는 것임. 동일 면적에 더 많은 나무를 동시에 심을 수 있으며, 수확 일정도 조절할 수 있어 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농약 사용도 최소화할 수 있어 환경친화적이기도 함. 또한 수확된 농산품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들은 콜드체인(Cold Chain) 운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계 곳곳으로 운송함.

## (2) 선키스트(Sun Kist)

- 세계적인 다국적 청과 메이저 업체인 선키스트는 1893년 농가들이 오렌지 가격 하락에 공동대처하고 판로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농가들을 주축으로 설립됨. 이후 1908년 오렌지 판매 촉진을 위해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지금의 글로벌 브랜드인 선키스트(Sunkist)를 등록상표로 확정함.
- 2003년 현재 선키스트는 지방출하조합 조합원 3000여명과 선과회사의 선과장을 이용하는 지구거래소 조합원 3000여명 등 총 6000여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음. 조직 구조는 크게 연합회와 지구거래소, 지방출하조합으로 나뉘며, 현재 선과장 60개, 지방출하조합 28개, 선과회사 24개, 지구거래소 17개소를 갖추고 있음.
  - 오렌지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와 아리조나주 재배 농가의 65%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레몬은 70~80%가 조합원임. 이들의 오렌지 재배 면적은 전체 재배면적 30만 에이커의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으며, 오렌지와 레몬으로 9억 42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함.
- 선키스트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재 품질에 따라 1등급은 Sunkist,

2등급은 SK란 브랜드로 구분해 출하하고 있음. 특히 오렌지 선별 등급을 캘리포니아 등급보다 상향 조정한데도 불구하고 1등급 비율이 90%에 달함. 여기에 연합회의 품질검사원이 집하장(packing house)을 순회하며 품질관리를 지도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에도 검사원을 배치해 집하장에서 출하한 농산물의 샘플을 수집 검사, 품질에 문제가 있는 집하장은 해결 시점까지 폐쇄시키고 있음. 특히 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선키스트’ 브랜드와 별도로 집하장마다 각기 자신의 브랜드를 부착토록 함.

- 선키스트는 철저한 판매계약과 공동계산 방식을 따르고 있음. 소비자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중 균일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임. 우선 생산자와 협동조합의 판매계약은 면적단위와 연단위로 시행되며, 가격은 판매 후 모든 비용을 제한 후 등급에 따라 공동계산 되는 방식을 취함. 이때 조합원은 재배면적 전부를 협동조합을 통해 판매할 수도 있으며, 일부만 판매할 수도 있음. 따라서 협동조합은 미리 1년간의 사업량을 추정할 수 있어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상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음.

### 3. 프랑스의 농업법인 동향

#### 3.1. 농업법인의 개요

- 프랑스는 유럽에서 제일 먼저 법인경영을 도입한 나라이며, 1960년대까지 농업경영조합(SCEA; Societe Civile d'Exploitation Agricole)이 소농을 중심으로 결성되는 정도였음.
- 1962년의 농업기본법보완법에서 각종 농업경영 조직을 육성하도록 규정한 이후, 1972년 공동농업경영단(GAEC; Groupement Agricole



d'Exploitation en Commun)이 창설되고, 이어 1985년에는 영농유한회사(EARL; Exploitation Agricole a Responsabilite Limitee) 제도가 창설됨.

○ 농업경영조합(SCEA)

- 성격: 민법의 규정을 기초로 삼아 만들어진 조합이며 법인격을 가짐.
- 목적: 농가들이 농지 등의 영농자산을 공동 경영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함.
- 사업: 경종, 포도주, 과실 등의 영년작물, 채소·원예, 축산 등의 공동경영

○ 공동농업경영단(GAEC)

- 성격: 공동경영을 위한 경영자 집단으로 농지출자, 현금출자, 노동출자로 설립
- 목적: 농가들이 농기계, 농지 등의 영농자산을 공동투자함으로써 규모경제를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함.
- 사업: 농업경영(임차지 경영도 가능)
- 구성원: 농지 혹은 시설 등의 영농자산 출자자 및 노동 출자자(영농기술자)로 구성되며, 1호 1법인으로도 설립 가능
- 조직 형태: 대부분 가족경영(혈연집단)이 확대된 법인형태

○ 영농유한회사(EARL)

- 성격: GAEC에 비농업인의 자본 참여를 허용한 회사형태로서, 다만 비농업인의 출자 지분이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함. 또한 설립 시에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반드시 1인 이상 참여해야 함.
- 목적: 농업경영자산의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원의 공동경영을 목적으로 함.
- 사업: 농업경영(임차지 경영도 가능)

### 3.2. 농업법인의 동향

- 법인 설립을 장려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 회계비용의 1/4을 정부가 지원하며, 특히 농업인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법인의 자산을 소유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조가 불가능하도록 함.
- 농업경영의 주축은 가족경영이지만, 농업법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서 2000년 당시 10만 개의 농업법인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 GAEC 4만 5천 개소, EARL 3만 개소, SCEA 1만 5천 개소, 그 밖에 임의 형태인 농업주식회사 3천개소 등이 운영중임.
  - 농업법인이 경작하는 경지규모는 프랑스 전체의 3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평균 경지규모는 개별 농가가 30ha 수준인데 대하여 GAEC가 106ha, EARL이 84ha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최근 들어 영농후계자들의 농업법인에 대한 호응이 높아져 35세 미만의 젊은 취농자 중 절반 이상이 농업법인을 통해 신규 취농하는 경향임.
- 농업법인에는 이 밖에도 농업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농업용토지자산의 보유·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토지집단(GFA)과 부동산민사조합(SCI) 등이 있음.
  - GFA(Groupement Foncier Agricole)는 농지소유자의 집단으로서 출자한 농지를 유지관리하는 법인이며, 대부분 농지임대차법에 의하여 농업경영자에게 장기임대하고 있음. 조직 형태로 가족형, 조합형, 투자형 등이 있으나, 농지의 분할 상속을 가족 간에 해결하는 목적으로 현재 1만 개소 정도가 설립된 것으로 파악됨.
- 199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의해 정부의 농업 보조정책이 축소됨으로써 농가 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농업법인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신규 취농자는 기존 법인에 파트너로서 영농을 시작하는 것이 용이하며, 특히 여가를 지향하는 젊은 세대들이 법인경영에서 여가활동을 추구하는 경향임.
- 정부에서도 앞으로 영농법인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5~20년 후에는 농업법인이 개별 경영체의 수를 능가할 것이며, 경영규모가 크고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 농업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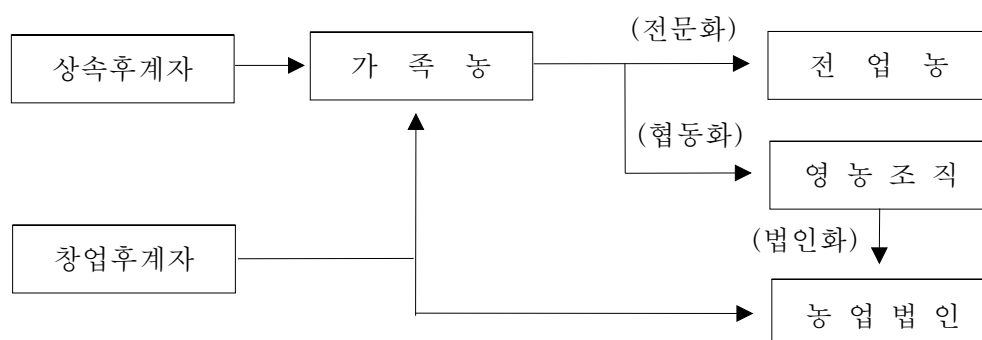
## IV. 기업농의 조건과 정책과제

### 1. 농업 진입의 관련제도

#### 1.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상속농가 중심으로 농정을 운용하여 왔으며, 따라서 농업인력과 농업경영체에 관련된 제도와 정책에서 신규 참가를 제한하는 요소가 광범위하게 존재함.
  - 상속농가 후계자는 이농 후에도 자유롭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비농업인이 농업(경종농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함.
  - 각종 농정대책의 대상이 농가에 편향되어 추진되고 있음.
    - \* 부채대책은 농가부담경감의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농업법인은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고 일반법인은 전혀 정책 대상이 아님.
  - 농촌사회의 폐쇄적 관습으로 신규 농업인의 진입을 저해하고 있음.
    - \* 1993년 도입된 학사개척농 제도는 1년간 시행된 후 폐지되었으며, 창업농 지원에 대해서도 기존 농가의 부정적 시각이 큼.

그림 4-1. 현행 농업인력과 농업경영체 육성의 체계



- 농업법인제도는 가족농을 보완하는 제도로 도입되어 원천적으로 비농업인의 기업적 농업경영이 불가능함.
  - 농업법인 제도의 취지는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 또는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에 있으므로, 비농업인의 창업을 허용한 것이 아님.
  - 현 제도하에서 일반법인은 영농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농지소유는 불가능하며, 농지소유를 위해서는 농업법인이 되어야 하나 비농업인의 참여제한 등의 규정이 존재함.
  - 농지 임대를 통한 경영도 농업인의 농지임차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 사실상 곤란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활동을 하는 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농업법인과 동일한 농업경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과 차등적으로 취급됨.
  - 예를 들어 구미원예수출공사는 국고보조 없이 융자지원만 받았으며, 구미원예농단(농업회사법인)은 40% 국고보조 지원됨.

표 4-1. 농업경영 진입에 대한 규제 내용

|         | 농업법인                 |                                                                   | 일반<br>회사법인 |
|---------|----------------------|-------------------------------------------------------------------|------------|
|         | 영농조합                 | 농업회사법인                                                            |            |
| 농업경영 제한 | 경영 가능                | 경영 가능                                                             | 경영 가능      |
| 농지소유 제한 | 소유 가능                | 소유가능(단, 농업인이 대표이사, 집행이사의 1/2이상이 농업인, 총출자액의 1/2이상이 농업인 출자인 법인만 해당) | 소유 불가      |
| 비농업인 참여 | 준조합원으로 참여 가능/출자제한 없음 | 농업회사에 출자할 수 있으나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3/4 미만이어야 함                      | 제한 없음      |
| 정책자금 지원 | 우 대                  | 우 대                                                               | -          |
| 세제상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조합 우대     |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우대                                            | -          |
| 설립 근거법  | 농업·농촌기본법             | 농업·농촌기본법                                                          | 상법         |

## 1.2. 개선 방안

- 가족농을 비롯한 다양한 농업경영체가 성립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농지법 및 농업법인 제도의 개선을 추진함.
- 농지의 소유 규제는 완화하고 농업 목적의 이용을 철저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함.
  -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은행을 통한 장기임대를 허용하여 경영규모 확대에 기여
- 농업법인에 외부자본과 경영전문인력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함.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이용규제를 강화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지분 제한에 맞게 농업인 지분을 완화
  - 전문 경영인의 농업법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대표이사, 집행이사의 제한 규정을 삭제
- 지자체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농업 관련 공기업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인정함.
  -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이 영농 활동을 하는 경우에 농지소유, 자금지원 및 세제상 혜택을 농업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 지역 특화발전특구법의 농업특구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적 농업경영을 유치하고 지역농업 혁신을 위한 시범기지로 활용함.
  - 집단적 영농의 조건이 구비된 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을 통한 장기임대 방식의 부락농업경영제를 형성
  - 농업특구(구조개선특구)에서 일정 기간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자경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

## 2. 농업경영체 지원을 위한 정책

### 2.1. 현황과 문제점

- 농가와 농업법인 대부분이 스스로 농업경영체라는 인식이 미흡하며, 제도적으로도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아님.
  - 농산물 직접판매 등으로 수입을 늘리려는 개인 사업형 농가의 증가에 따라 인터넷 판매, 카드 결제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 없이도 카드 결제, 인터넷 판매 및 계산서 발행이 곤란함.
  - \* 전문여신금융업법에는 카드가맹점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운영상에 있어 금융기관에서 이를 요구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서 사업자등록증 요구
  - 작물재배업은 지방세인 농업소득세 부과대상이므로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현재는 도매·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실정이며, 도매·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농업인 지원혜택이 배제되어 다시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름.
  - \* 농가부업으로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 등을 하려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
- 정책 대상에서 농업법인은 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 농업법인의 사업영역이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농업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곤란함.
  -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에 관련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영농조합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
- 농업법인의 부채문제는 2003년부터 농업경영체에 대한 상설화된 부채경감대책으로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 재해·가축질병·가격급락 등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에 대해 저리의 부채상환 자금을 대부 지원

## 2.2. 개선 방안

-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요건을 완화(농림사업실시규정 개정)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현물(농지, 시설 등)로 출자하는 규정을 폐지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을 ‘조합원 5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한도를 완화(총 출자액의 25% 이하 → 50% 이하).
-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제한을 완화하여 사업기회를 확충함.
  - 주말농원, 관광농원 등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자가생산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점 등 소득사업을 허용
- 농업경영체 사업자등록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함.
  - 근본적인 사업자등록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우선 작물재배업의 경우 농림부가 사업자 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는 공식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 근본적인 사업자 등록제도의 운영주체 문제는 관계부처(행정자치부 또는 국세청)와 협의가 필요



- 농업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및 보육 기능을 강화함.
  - 농업 벤처 창업에 소요되는 초기 창업자금 지원을 원활화하도록 하고, 농업투자전문조합의 투자 활성화와 펀드추가 결성을 추진
  - 농업창업보육센터를 권역별로 확충하고 창업지원 기능 활성화
- 농업경영체의 교육·컨설팅 지원을 강화함.
  - 농업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컨설팅 추진을 위한 조직과 기능을 확충하고 컨설팅 지원을 확대
  - 건실한 법인에 대한 사업비 확대 및 국고 지원비율 상향 검토 등 인센티브를 도입

### 3. 농업경영체 관련세제

#### 3.1. 현황과 문제점

- 농업소득세 문제
  - 농업소득세(지방세)는 하나의 세율구조로 농업인과 법인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며, 농업소득세율의 누진구조가 소득세율 또는 법인세율 보다 가파르게 되어 있어 대규모 영농에 장애로 작용함.

표 4-2. 농업소득세와 소득세·법인세의 세율 구조

| 과세표준        | 농업소득세율 | 소득세율 | 법인세율         |
|-------------|--------|------|--------------|
| 400만원 이하    | 3%     | -    | -            |
| 1,000만원 이하  | 10%    | 9%   | -            |
| 4,000만원 이하  | 20%    | 18%  | -            |
| 8,000만원 이하  | 30%    | 27%  | -            |
| 8,000만원 초과  | 40%    | 36%  | -            |
| 10,000만원 이하 | -      | -    | 13%(05.1월부터) |
| 10,000만원 초과 | -      | -    | 25%(상동)      |

- 농업소득세의 징수 실적은 연간 30억원 정도로 미미함.
- \* 농업소득세 징수실적: (96) 39억원 → (00) 33 → (01) 13 → (02) 27
- 농업법인의 취득세·등록세 문제
  - 농업법인의 특성상 작물재배·축산업 경영을 위해 농지·초지 취득이 필요하므로 창업시점에 부동산 취득 관련 세 부담이 큼.
  - \* 현재 농업법인의 경우 취·등록세를 계속 50% 감면 받지만 사업시작 후 최초 몇 년간 자기자본 충원을 위한 지원 필요
  - 대부분의 농업법인이 부채 비율이 높아 금융권으로부터의 추가 대출이 곤란하며, 조합원들로부터의 농지나 부동산 현물출자도 취득세·등록세 부담으로 곤란함.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 문제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농업소득에 대한 감면혜택을 일부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 작물재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최저한세(10%) 적용업종이 아니므로 농업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15%의 최저한세 적용
- 농지 구입자금의 경비 처리
  - 농업(법)인이 농지 구입을 위해 임차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농업소득세에서 경비처리되지 않아 영농규모화 의욕을 저해함.
  - \* 법인세·소득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의 구입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경비처리하고 있으며, 다만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자산가격에 부과하여 감가상각 처리
- 친환경농업용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비료관리법이나 농약관리법에 의해 비료나 농약으로 등록된 친환경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나, 자재의 특성상 비료나 농약으로 공정규격을 갖출 수 없어서 비료 또는 농약으로 등록되지 못한 자재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형평성 문제가 내재함.

### 3.2. 개선 방안

- 농업소득세 과세 특례
  - 농업소득세 부과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세율은 추후 농업소득세율 개정 시 소득세율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반영
  - \* 대만의 경우도 1986년 이후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과세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등록세 지원
  - 농업법인의 경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창업 후 2년 내 취득하는 농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후 취득하는 것은 현행대로 50% 감면을 검토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단, 농업소득이 아닌 소득은 최저한세 적용).
  - 작물재배업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 농지 구입자금에 대한 경비 처리
  - 농업(법)인이 농업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 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를 경비로 처리되도록 행정자치부 해석지침 변경을 검토
- 친환경농업용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된 친환경농업용 자재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영세율 적용 또는 사후 환급을 받는 방안으로 검토

표 4-3. 농업법인의 세제감면 내용

| 구 분                       | 세 제 감 면 사 항                                                                                                                                                                                                                                                                                                                                                                                                                                                                                                                                                                                              |
|---------------------------|----------------------------------------------------------------------------------------------------------------------------------------------------------------------------------------------------------------------------------------------------------------------------------------------------------------------------------------------------------------------------------------------------------------------------------------------------------------------------------------------------------------------------------------------------------------------------------------------------------|
| 국 세<br>(조특법)              | <p>&lt;법인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소득 면제(06.12.31까지)</li> <li>- 농업외소득 출자조합원당 1,200만원까지 면제(영농조합)</li> <li>- 농업외소득 최초 소득발생 해와 그 후 3년간 50%감면(농업회사)</li> </ul> <p>&lt;양도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년 이상 계속 경작자가 농업법인에 농지양도 시 면제</li> <li>- 농업법인이 5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05년 말까지 농업법인에 양도시 면제</li> </ul> <p>&lt;부가가치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료, 농약 및 농업·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06.12.31까지 공급분)</li> <li>- 농업경영·농작업대행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06.12.31까지)</li> <li>- 농업용 석유류 구입 시 부가가치세 감면(05.6.30까지 면제, 05년 말까지 75% 감면)</li> </ul> |
| 지 방 세<br>(지방세법)           | <p>&lt;취득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유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50% 감면</li> </ul> <p>&lt;등록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설립등기 시 면제</li> <li>- 고유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50% 감면</li> </ul> <p>&lt;재산세, 종합토지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기준일(재산세 5.1, 종합토지세 6.1)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은 50% 감면</li> </ul>                                                                                                                                                                                                                                              |
| 조합원에<br>대한<br>감면<br>(조특법) | <p>&lt;양도소득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06.12.31까지 출자분)</li> </ul> <p>&lt;배당소득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소득 배당소득 면제(06.12.31까지)</li> <li>- 농업소득외 배당소득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영농조합)</li> </ul>                                                                                                                                                                                                                                                                                                                                               |

## 참 고 문 헌

- 김준보. 1962. “기업농과 협업농의 생산성 평가.” 『농업경제연구』 제5집. 한국농업경제학회.
- 김인호. 1994. 6. “삼성의 농업 야심 ‘애국’인가 ‘투기’인가.” 『사회평론·길』.
- 김정호 등. 1990. 『전업농 육성과 영농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 2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등. 1997.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등. 2003. 『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곤. 2003.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업의 역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용. 2004. 『농업법인 및 기업농업 활성화를 위한 세무 및 제도 개선안』(미발간자료).
- 농림부. 2004. 6.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시안).
- 박석두 등. 2002. 『농지소유 및 이용구조 변화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신기엽. 2001. 『농업구조 변화와 농업인력대책』. 농협중앙회 조사부.
- 양병우. 2001. “기업농의 성격과 유형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11(1).
- 이정환. 1998. 『농업의 구조 전환. 시작과 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영일. 2003. “농정패러다임의 정립을 위하여.” 『참여정부의 농업정책 전개 방향』.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 통계청. 2003.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P68**

**기업농의 가능성과 조건**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4. 8.

발 행 2004. 8.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 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965-8401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 ~5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